#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70

발의연월일: 2024. 8. 20.

발 의 자:한정애·김 윤·조인철

남인순 · 이수진 · 서영교

김준형 • 정성호 • 박지원

송옥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서, 합병시점을 지배주주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고평가되고, 지배주주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삼성물산의 주가는 저평가된 시기에 합병을 결정함으로써,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결정된 반면 저평가된 삼성물산의 소액 주주들은 손해를 입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이뿐만 아니라 최근 소형장비 분야에서 매년 1조원이 넘는 영업이 익을 거두고 있는 기업인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인적분할 해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문가 들은 이번 사업 재편이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방안이고, 두산에너빌리 티와 두산밥캣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서 상장회사의 합병에서는 예외 없이 기업가치를 시가로 정하도록 강제한 자본시장법을 악용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음.

이에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합병 등의 가액이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4 등).

#### 법률 제 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5항에 따른 공시의 내용 및 방법, 제8항에"로 한다.

- ②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른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은 주식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정된 공정한 합병 등의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 등의 가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공정한 합병 등의 가액이라는 입증책임은 주권상장법인(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된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비상장법인을 말한다)이 부담한다.
- ④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주 권비상장법인 간의 합병 등(이하 이 조에서 "계열회사 간 합병 등" 이라 한다)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은 감사 또는 감사위 원회가 선정한다.

- ⑤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합병 등과 관련하여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과 합병 등의 상대 법인과의 이해관계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⑥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주주는 해당 계열회사 간 합병 등에 관한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상법」 제368조제3항에 따른 특별한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본다.
- 1.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이거나 합병 등의 상대 법인의 특 수관계인일 것
- 2. 그 주주의 해당 계열회사 간 합병 등에 관한 의결권 행사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에 해당할 것
- ⑦ 주권상장법인(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된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비상장법인을 말한다)과 그 법인의 이사,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는 이 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돼 투자자가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제7항에 따른 손해배상 사유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18제4호 중 "제165조의4제2항"을 "제165조의4제3항"으로 한 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1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
				른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
				액은 주식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자의 이
				<u>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u>
				서 산정된 공정한 합병 등의
				<u>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u>
				경우 합병 등의 가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공정한 합
				병 등의 가액이라는 입증책임
				은 주권상장법인(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된 주
				권상장법인 또는 주권비상장법
				인을 말한다)이 부담한다.
②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u>&lt;신 설&gt;</u>				④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
				<u> 상장법인 간 또는 주권상장법</u>
				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합
				병 등(이하 이 조에서 "계열회
				사 간 합병 등"이라 한다)의

<신 설>

<신 설>

- 경우 제3항에 따른 외부평가기 관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다.
- ⑤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합병 등과 관련하여 그 특수관계인 (이하 이 조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과 합병 등의 상대 법인과의 이해관계를 공시하여야한다.
- ⑥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주주는 해당 계열회사간 합병 등에 관한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상법」 제368조제3항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본다.
- 1.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 인이거나 합병 등의 상대 법 인의 특수관계인일 것
- 2. 그 주주의 해당 계열회사 간 합병 등에 관한 의결권 행사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

### <신 설>

## <신 설>

③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 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 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 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u>제2항</u>에 따른 평가 업무

### 상충에 해당할 것

- ① 주권상장법인(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된 주 권상장법인 또는 주권비상장법 인을 말한다)과 그 법인의 이 사,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는 이 법 규정을 위반 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이 불 공정하게 결정돼 투자자가 손 해를 입은 경우 투자자에 대하 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 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⑧ 제7항에 따른 손해배상 사 유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 </u>	 
<u>제3항</u>	 

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 전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1. ~ 3. (생략)
- 4. <u>제165조의4제2항</u>을 위반하여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5. ~ 25. (생략)

<u>⑩</u>
항에 따른 공시의 내용 및 방법,
제8항에
<u>.</u>
세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
한 조치)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65</u> 조의4제3항
5. ~ 25. (현행과 같음)